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36260 판결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323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362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1가소1388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송제경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신민호

변론종결 2024. 2. 6.

판결선고 2024. 3.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1가소138882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2018. 12. 17. 500만 원을, 2019. 4. 8. 700만 원을, 2019. 7. 24. 1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9. 7. 24.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2019. 7. 23. 피고 C가 원고에게 호의로 준 100만 원을 감사하다면서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23.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9. 7. 24. D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과 4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 작성의 1,300만 원 차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9. 10. 25. E오피스텔 F호를 2억 3,7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을 위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9. 11. 11.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이 경매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인도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한 10개월간 매월 100만 원(또는 779,167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 된 셈이므로 합계 1,000만 원(또는 7,791,67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을 위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E오피스텔 F호를 점유한 데에 따라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오연정, 판사 안승호